

2020년도 제2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12.(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82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153건(안건번호 제2020-148658호~15006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48658호~148659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48660호는 영화 파일을 '☆☆☆☆☆☆'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복제·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15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8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13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TV도쿄', 'TV조선', 'tvN', 'OCN', '일본 MBS', 'netflix', '판시네마', '일본 NTV', '일본 후지TV', 'CGV 아트하우스', '미국 HBO', '일본 TVS', 'CJ엔터테인먼트',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주)쇼박스', '메가박스(주)', '미국CWTV', '콘텐츠웨이브', '미국 FOX', '뉴데이픽처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15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48658호~150064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8658호~14865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한 화 전체 분량을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2개의 게시물임.

(제2020-148658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150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0분 23초를 제공하고 있음.

(제2020-148659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3분 54초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우리나라에서 아직 상영되지 않은 영상물이어서 긴급 대응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이미 상영되어 중점 보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안전은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된 안전으로 긴급 대응 저작물에 해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8658호~14865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같은 생각임.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8658호~14865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48660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네이버 카페 채팅방의 URL을 기초로 보호원이 '☆☆☆☆☆☆'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14866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 카페 채팅방의 직접 링크(direct link)를 통해 연결되는 게시물임. 민원인이 신고한 '◆◆◆' 카페 채팅방 직접 링크(direct link)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으

며, 영화 '○○'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해당 서버의 게시물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지?

- C 위원: 유효기간이 '0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파일 다운로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그렇다면 해당 불법복제물은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클라우드에 접속해 보면 "해당 게시물은 유효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직접링크(direct link)를 통해서 연결되는 국내서버 내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그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입장임. 하지만 현재 해당 원천게시물이 삭제되어 유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대상 OSP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OSP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카페 채팅방에 해당 OSP 클라우드 게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direct link)가 게시됨.

- A 위원: 카페 채팅방 조사 자료를 다시 보여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 카페 채팅방에서 직접링크 URL을 게시함.
- A 위원: 게시된 2개의 URL은 동일하며, 해당 원천게시물은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 B 위원: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어디로 공문이 발송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OSP인 '☆☆☆☆☆☆'로 발송됨. OSP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전달함.
- C 위원: OSP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불법복제물이 삭제된 것으로 보여 삭제의 시정권고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B 위원: 해당 카페 채팅방 입장 인원을 알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채팅방 입장 인원은 300명임. 신고 당시 직접링크를 읽은 인원은 74명임.
- B 위원: 74명이 전부 해당 게시물을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해당 게시물을 읽은 인원은 불법복제물을 다른 곳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866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해당 저작물은 시중에서 상영 중인 영화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현재 불법복제 게시물이 삭제되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제2020-148660호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B 위원: 이견 없음.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866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48661호~15006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

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강적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48662호는 시사 프로그램 '강적들'임. 웹하드에서 '강적들'을 20포인트로 제공함. 357화 전체 제공하고 있음.

(음원 '봄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873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BTS' 전집을 무료로 제공 중임. ZIP 파일로 제공함. BTS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가수로 2020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아티스트상 외 다수 수상함. 'Dynamite', 'Savage love'는 billboard HOT 100 1위를 기록한 바 있음.

(만화 '오오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4995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오오쿠' 1-7권을 100 포인트에 ZIP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전자책 3,600원에 판매함. 에도 막부 당시 일본내의 전염병으로 남성인구가 급감하며 남녀의 성 역할이 바뀌며 일어나는 여성 쇼군의 일대기와 오오쿠 속 남성들의 암투를 그림.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48661호~15006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B,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48661호~150064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8661호~15006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8658호~15006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19.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